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BL

2019. 3. 8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순레이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2
1) 조직도	2
2) 지배구조의 특징	2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
다. 관련 규정	3
2. 이사회	3
가. 역할(권한과 책임)	3
1) 총괄	3
2) 구체적 역할	3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3
나) 정관 변경	4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4
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4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4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4
사)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사전 심의	5
아) 위원회의 설치·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자) 자회사의 취득·매각	5
차) 영업채널의 신설·폐지 및 조직의 신설·폐쇄·통합	5
카) 30억 이상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 승인·폐지 (아웃소싱 포함)	6
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6
하) 선임계리사의 선임 및 해임	6
거) 비등기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너)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7

더) 중요한 자산이 취득 매각	7
러) 법령 등에 의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7
나. 구성(이사)	8
1) 총괄	8
2) 구성원	9
3) 요약	12
다. 활동내역	12
1) 활동내역 개요	12
2) 회의 개최내역	12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17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의사회 의장 선임 사유	17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
가. 역할(권한과 책임)	18
나. 구성	18
다. 선임기준	19
1) 후보 자격요건	19
2) 후보 추천 절차	19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19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0
1) 활동내역 개요	20
2) 회의 개최내역	20
3) 평가	20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21
1) 감사위원 후보	21
가) 후보자 인적사항	21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4) 경력	
나) 후보 제안자	22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다) 후보자 추천 사유	22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2) 후보자 추천경로	

라) 자격충족 여부	23
(1) 소극적 요건,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3) 본인 소명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23
2) 사외이사 후보	23
가) 후보자 인적사항	23
(1) 성명, (2) 출생연도, (3) 출신학교, (4) 경력, (5) 사외이사 경력	
나) 후보 제안자	25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다) 후보자 추천 사유	25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2) 후보자 추천경로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26
마) 자격충족 여부	26
(1) 소극적 요건,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4) 본인 소명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28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8
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28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3) 후보군 현황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28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28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29
가) 이사회	29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3
다) 감사위원회	34
라) 위험관리위원회	36
마) 보수위원회	38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39
나. 임원책임보상보험 현황	41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41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41
1) 사외이사 텀링	42
2) 사외이사 지양팅루	42
3) 사외이사 량페이	42
4) 사외이사 박상래	43
5) 사외이사 이창수	43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43
바. 사외이사 평가	43
1) 평가 개요	43
2) 내부평가	44
가) 내부평가 개요	44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44
(1) 총론,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3) 외부평가	44
가) 외부평가 개요	44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45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45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45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45
1) 사외이사 량페이	45
2) 사외이사 텀링	46
3) 사외이사 지양팅루	46
4) 사외이사 박상래	46
5) 사외이사 이창수	47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47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47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49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49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49

1) 일반	49
2) 비상계획	50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50
1) 소극적 요건	50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50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51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51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51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51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51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51
3) 후보군 현황	52
바.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52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52
6. 감사위원회	52
가. 역할(권한과 채무)	52
1) 총괄	52
2) 구체적 역할	53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53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54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54
라) 재무제표 검토 등	54
마) 기타 내부통제 주요활동 보고 수령 등	55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55
1) 총괄	55
2) 구성원	56
다. 활동내역 및 평가	56
1) 활동내역 개요	56
2) 회의 개최내역	56

3) 평가	59
라. 감사보조조직 등	60
1) 감사보조조직 설치현황	60
2) 외부전문가 활용 내역	60
7. 위험관리위원회	60
가. 역할(권한과 책무)	60
1) 총괄	60
2) 구체적 역할	61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61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61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61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61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62
1) 총괄	62
2) 구성원	62
다. 활동내역 및 평가	62
1) 활동내역 개요	62
2) 회의 개최내역	63
3) 평가	65
8. 경영위원회	65
가. 역할(권한과 책무)	65
1) 총괄	65
2) 구체적 역할	65
가) 추가예산 (5,000만원 이상)	65
나) 투자정책수립 및 결정	66
다) 투자정책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사항	66
라) 계약자 배당률 결정 및 산출	66
마) 최선의 추정 가정 설정	66
바) 임원의 해임을수반하지 않는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 폐쇄,통합	66

사) 조직(실/부서) 명칭 변경	66
아) 실간 업무분장 변경/조정	66
자) 1억 5천만원 이상 30억 미만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 승인/폐지(아웃소싱 포함)	67
차) 상품개발/Repricing	67
카) 채널 Brand name/CI 개발 및 변경	67
타) 장단기 영업전략 및 정책 수립/기준 변경	67
파) 영업수당체계 변경	67
하) Agent를 위한 행사/선물/시책 (1억원 이상)	68
거) 영업직원 보상제도 등의 신설 및 주요 변경	68
너) 영업채널의 연도평가 등 주요 행사	68
더) 비등기임원 승진/보직변경/연임/갱신/해임의 징계	68
러) 직원 정기 승진 및 임금인상/표창/징계, 명예(특별)퇴직	68
머) 부동산 및 기타자산의 취득/매각/업체선정	69
버) 재보험 계약의 체결/해지	69
서) 채널별/상품별 수수료 지급률 결정	69
어)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69
나. 구성(경영위원회 위원)	69
1) 총괄	69
2) 구성원	7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0
1) 활동내역 개요	70
2) 회의 개최내역	70
3) 평가	84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84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84
제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85
가. 총괄	85

나. 구성	85
1) 총괄	85
2) 구성원	86
다. 권한과 책임	86
1) 총괄	86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6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7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7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87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87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87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88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88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88
1) 의사결정 절차	88
2) 활동내역 개요	89
3) 회의 개최내역	88
4) 평가	89
2. 보수체계	90
가. 주요사항	90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90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90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91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91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91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92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92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92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92

나. 보수 세부사항	92
1) 임직원 총보수	92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92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93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93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93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94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94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94
6) 이연보수의 조정	95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95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에이비엘생명보험(이하 “당사” 라 합니다)은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는 한편, 이사회가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를, 그리고 기타 경영상 판단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승인 및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가지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 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적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18년말 현재 이사회내 71.4%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보험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2018년말 현재 경영분야 1명, 법률분야 1명, 금융분야 1명, 보험 및 재무분야 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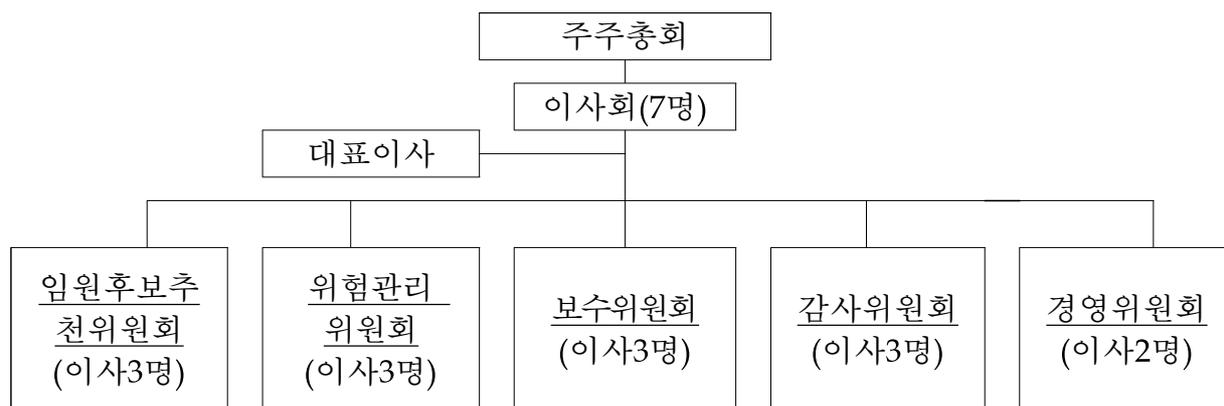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을 본점에 비치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개정사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은 물론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현황을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지배구조의 구성·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 공시실 - 경영공시)

<https://www.abllife.co.kr/st/pban/admPban/gvrncStrtPban/2018>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작성기준일:2018.12.31.]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권이 있고, 특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이사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5인으로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독립성 및 경영진 견제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견제기능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3인을 모두 사외이사로 하고, 각 위원회(경영위원회 제외)의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작성기준일:2018.12.31.]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 사외·비상임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표이사의 선임 등 회사의 업무집행,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	순레이, 왕루이, 량페이, 지양팅루, 텐링, 박상래, 이창수(5/7)	순레이 (상임)	정관 제31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임원 후보 발굴, 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등	량폐이,텐링,왕루이 (2/3)	량폐이 (사외)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규 범 제27조
감사 위원회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내부감사의 운영·통제 등에 관한 사항 등	텐링,지양팅루,박상 래(3/3)	텐링 (사외)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규 범 제25조
보수 위원회	회사 임원의 보수문제에 대한 검토·결정, 직원의 보수정책에 관한 주요사 항 등	지양팅루,량폐이,순 레이(2/3)	지양팅루 (사외)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규 범 제33조
위험관리위 원회	리스크 관리와 전략 결정 등에 관한 사항	텐링,이창수,순레이 (2/3)	텐링 (사외)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규 범 제31조
경영 위원회	경영, 재무, 투자, 인사, 영업 기타 이사회에서 위 임한 사항	순레이,왕루이(0/2)	순레이 (상임)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규 범 제29조

다. 관련 규정

- 첨부1.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정관
- 첨부2.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건전하고 적법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대주주·이사와 회사 간 이해상충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사항의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지원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5조① i,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에 따라 2018년 3월 제2차 이사회에서 2018년 경영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나) 정관 변경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① ii,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2018년도에는 정관 변경이 없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연도예산(임직원 보수 포함) 및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① iii,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제2차 이사회에서는 2018년 연간 예산편성 승인의 건 및 FY2017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수립·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① v,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관련 규정에 의해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12월 제8차 이사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최종 법규문구 반영,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화 및 ML/TF 위험관리 역할 부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운영 규정 개정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개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① vi,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대한 개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는 대주주·이사와의 거래 등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과 계열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 및 심의·의결을 이사회

고유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11조②, 지배구조법 제15조①vii,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에 따라 2018년 1월 제1차 이사회에서는 ABL글로벌자산운용과의 일반계정 투자일임운용 계약 연장, ABL글로벌자산운용과의 변액계정 투자일임계약 연장 승인의 건을, 2018년 7월 제5차 이사회에서는 동양생명과의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을, 2018년 12월 제8차 이사회에서는 ABL생명자회사 ABA금융서비스와의 경영지원 서비스 계약체결의 건, 보험대리점 계약 체결 및 사무실 임차지원의 건을 각 심의 후 의결하였습니다.

사)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사전 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바,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기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362조, 정관 제1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에 따라 2018년 3월 제2차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2018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제4차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2018년 4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 위원회의 설치·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기타 이사의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경영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의 결의로 정합니다(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6조). 이에 따라 2018년 3월 제3차 이사회에서는 경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각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자) 자회사의 취득·매각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은 이사의 결의로 하여야 하고(상법 제393),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15조).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제8차 이사회에서는 ABL생명 자회사 독립법인대리점 사업계획 승인의 건 및 ABL생명 자회사 독립법인대리점의 추가 출자 지분 취득 승인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차) 영업채널의 신설·폐지 및 조직의 신설·폐쇄·통합

영업채널의 신설·폐지, 실의 상위조직(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

폐쇄·통합 및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 및 임원의 해임을 수반하는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폐쇄·통합은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상법 제393조,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제8차 이사회에서는 PA채널 사업종료의 건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가) 30억 원 이상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 승인·폐지

3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중대하고, 예산·비용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상법 제393조,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제3차 이사회에서는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선정 승인요청의 건을, 2018년 12월 제8차 이사회에서는 ABL생명 자회사 독립법인대리점 사업계획의 승인요청의 건을 각 의결하였습니다.

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은 이사회가 위임할 수 없는 고유 권한이고(상법 제393의2), 이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정관 제29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는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의 건은 없었습니다.

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 해임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지배구조법 제25조③, 제28조②), 이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제3차 이사회에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을, 2018년 3월 제3차 이사회 및 11월 제7차 이사회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하) 선임계리사의 선임 및 해임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선·해임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보험업법 제181조), 이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2018년도에는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의 건은 없었습니다.

거) 비등기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당사 정관은 회사가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에 따

라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고 그 선임절차는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절차를 따르는 바, 비등기임원의 선임 및 해임, 징계 보고 수령 또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정관 제29조 및 제37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제3차 이사회에서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연임 승인의 건을, 2018년 12월 제8차 이사회에서는 비등기임원 신규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너)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정관 제32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조).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3월 제3차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자산의 취득·매각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3조). 이에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 매각 및 업체선정 및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타자산의 취득, 매각 및 업체선정은 이사회 고유의결사항입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2018년 부의된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부동산 취득, 매각 및 30억원 이상인 기타자산 취득, 매각 안건은 없습니다.

러) 법령 등에 의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이사회는 위의 각 사항 이외에도, 기타 법령에서 이사회가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 또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의 각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393조, 정관 제31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당사 이사회는 2018년 11월 제7차 이사회에서는 즉시연금(상속연금형 환급플랜)처리방안에 관한 승인의 건, 12월 제8차 이사회에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적용 유예 연장 승인의 건을 각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3월 제2차 및 제3차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이사회 평가보고, FY2017 선임제리사 검증의견 보고, FY201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금융감독원 RASS 부문검사 결과 및 조치내용 요약 보고,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의 업무수행 실적 보고, New IFRS(IFRS17 & IFRS9) Project 진행상황 보고, 2017년 하반기 사규(규정)제·계정 현황보고를, 2018년 7월 제5차, 9월 제6차, 11월 제7차, 12월 8차 각 이사회에서는 IFRS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를, 2018년 9월 제6차 이사회에

서는 2018년 상반기 사규(규정)제·개정 현황보고, 2018년도 12월 제8차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2018년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18 AML(자금세탁방지)평가 등을 보고 받아 각 검토하였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는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두며,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 과반수로 합니다(정관 제27조②). 최소원수를 5명으로 정한 것은,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사외이사가 최소 3명 이상 필요한 것은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2018년말 현재 당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정관 제28조). 이는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하는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건전하고 적법한 경영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로 설정할 경우 직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다른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당사는 이사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8.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사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5명의 연임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고, 특히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합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③). 2018년말 현재 당사 이사회는 전문분

야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경영분야 1명, 법률분야 1명, 금융분야 1명, 보험 및 재무분야 4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보험 및 재무분야 전문가인 순레이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18년 3월에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 짜오홍

- 비상임이사
- 2017년도 이사회 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임기: 2017. 2. 15. - 2018. 3. 30.
- 경력: 안방보험그룹 부사장 <2011.7월-2017.2월>
안방자산관리 의장 <2011.7월-2016.2월>

나) 이사 순레이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18년도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임기: 2013. 11 1. - 2020. 6. 29.
- 경력: Allianz Life Korea CFO <2013-2017.6월>
Allianz Life China CFO <2009-2013>
Allianz Life Taiwan Chief Actuary <2008-2009>
AZAP, Singapore - Regional Actuary Consultant <2004-2007>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 Singapore - Chief Actuary <2003-2004>

다) 이사 왕루이

- 사내이사, CIO
- 경영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임기: 2017. 2. 15. - 2019. 3. 29.
- 경력: 안방보험그룹 인터내셔널 투자부문이사 <2015-2017.2월>
레전드 홀딩스 조이비오그룹 투자부문 부사장 <2012-2014>
중국 SMC 캐피탈 투자관리 <2011-2012>

라) 이사 로이구이

- 사내이사, CFO
- 경영위원회 위원
- 임기: 2017. 6. 30. - 2018. 6. 29.
- 경력: 메이플트리 투자회사 재무이사 <2016-2017.6월>
썬라이프 재무이사 <2006-2016>
DUCA 재무서비스 재무분석가 <2001-2006>

마) 이사 박상래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
- 임기: 2017. 2. 15. - 2019. 3. 29.
-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2010-현재>
보험상품위원회 위원 <2010-2018>
한국보험계리사협회 회장 <2012-2018>
보험개발원 <1991-2009>

바) 이사 이창수

- 사외이사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임기: 2017. 2. 15. - 2019. 3. 29.
- 경력: 숭실대학교 보험계리학 교수 <1992-현재>
금융소비자학회 차차기회장 <2018-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 연구위원 <2018-현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2016-2017>
보험개발원 연구부문장 <1991-1992>

사) 이사 량페이

- 사외이사
- 선임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
- 임기: 2017. 2. 15. - 2019. 3. 29.
- 경력: 룬밍법률사무소, 통상법률사무소 <2009-현재>
모토로라, 야신, 스파키즈, 애질런트, 인텔, 알스톰 법률자문<1995-2009>
권허법률사무소, 징텐법률사무소 <1990-1995>

스캐든 압스, 뉴욕본사 <1988-1989>

중국석화국제사업회사, 베이징, 법률고문 <1985-1990>

아) 이사 토텐링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임기: 2017. 2. 15. - 2019. 3. 29.
- 경력: 우한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보험과 학과장
 귀위안농업보험 독립이사
 무한 우상그룹 독립이사

자) 이사 지양팅루

- 사외이사
- 보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임기: 2017. 2. 15. - 2019. 3. 29.
- 경력: 북경대학교 광화 경영대학원 조교수 <2012-현재>
 워싱턴대학교 마이클 포스터 경영대학원 강사&연구원/조교 <2007-2012>
 대만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조교 <2001-2003>

차) 요약

[작성기준일자: 2018.12.31.]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짜오홍	비상임	(구)이사회 의 장	안방보험그룹 부사장 안방자산관리 의장	2017. 2.15.	2018. 3.30.	14개월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험 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순레이	상임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위 원장, (현)이사회 의 장	Allianz Life Korea CFO	2013. 11.1.	2020. 6.29.	61개월	경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 회 보수위원회
왕루이	상임	부사장	안방보험인터네셔 널 투자부문 이사	2017. 2.15.	2019. 3.29	22개월	경영위원회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로이 구오	상임	부사장	메이플트리 재무 투자회사 이사	2017. 6.30	2018. 6.29	12개월	경영위원회
박상래	사외	-	보험계리사협회 회장	2017. 2.15	2019. 3.29	22개월	감사위원회

이창수	사외	-	승실대 보험계리학 교수	2017. 2.15	2019. 3.29	22개월	위험관리위원회
량폐이	사외	선임사외이사,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장	통상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 2.15	2019. 3.29	22개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텐링	사외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우한대학교 교수	2017. 2.15	2019. 3.29	22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지양팅루	사외	보수위원회 위원장	북경대학교 광화 경영대학원 조교수	2017. 2.15	2019. 3.29	22개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8년에는 총 8회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97%입니다 (2017년도 평균 참석율 89.4%에 비해 참석율이 높아졌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2018. 2. 27. 10:30

[안건 통지일 : 2018. 2. 2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짜오홍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양팅루	량폐이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ABL글로벌자산운용과의 일반계정 투자일임운용 계약 연장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ABL글로벌자산운용과의 변액계정 투자일임계약 연장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 2018. 3. 30. 13:00

[안건 통지일 : 2018. 3. 2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짜오 홍	순래 이	왕루 이	로이 구오	이창 수	박상 래	텐링	지양 팅루	량폐 이		
1.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가. FY2017 선임계 리사검증의견 보고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나. FY2017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용실 태 보고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 내부회계관리제 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라. 이사회평가보고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4. 의결 안건											
가. 제65기(2017.1.1. ~2017.12.31.)결산 보고서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사업계획 및 예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정기주주총회 소집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8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18. 3. 30. 15:00

[안건 통지일 : 2018. 3. 2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순래이	왕루이	로이 구오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양 팅루	량폐이			
2. 이사 성명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금융감독원 RAAS 부문검사 결 과 및 조치 내용 요약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나. 신용정보보호관 리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 New IFRS (IFRS17&IFRS9) project 진행상황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라. 2017자금세탁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지보고										
마. 2017년 하반기 사규(규정) 제·개정 현황 보고	없음	-								
4. 의결 안건										
가. 2018년도 이사회 의장 선임	찬성	가결								
나. 2018년도 선임 사외이사 선임	찬성	가결								
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가결								
라. 주요업무집행 책임자 연임	찬성	가결								
마. 법무실장 및 준법감시인 선임	찬성	가결								
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가결								
사.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선정	찬성	가결								

라) 제2018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18. 4. 5. 9:00
 [안건 통지일 : 2018. 4. 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 구오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앙 텡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18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2018. 7. 11. 15:00
 [안건 통지일 : 2018. 7. 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순레이	왕루이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앙 텡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IFRS Project 진행상황 보고	없음	-						
4. 의결 안건									
	가. ABL, 동양생명 계열사간 거래 (당사 보유 부동산에 대한 동양생명과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건)	찬성	가결						

바) 제2018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 2018. 9. 13. 14:00
[안건 통지일 : 2018. 9. 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순레이	왕루이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양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IFRS Project 진행상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나. 2018년 상반기 사규(규정) 제·개정 현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4. 의결 안건								
	가.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18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18. 11. 15. 13:30
[안건 통지일 : 2018. 11. 1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순레이	왕루이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양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IFRS Project 진행상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4. 의결 안건								
	가.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즉시연금(상속 연금형 환급플랜) 처리방안	찬성	가결							
---------------------------------	----	----	----	----	----	----	----	----	----

아) 제2018년도 제8차 정기이사회 : 2018. 12. 13. 13:00
[안건 통지일 : 2018. 12. 1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순레이	왕루이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양 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2018년도 소송 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나. 2018년 내부통 제체계·운영 실 태점검 결과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 내부통제체 계·운영실태 평 가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라. 2018년 AML (자금세탁방지)평 가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마. Net IFRS (IFRS17& IFRS9) Project진행상황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4. 의결 안건									
	가. ABL생명 자회 사 독립법인대리 점 사업 계획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PA채널사업종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ABL생명 자회사 독립법인대리점 추가 출자 지분 취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ABL생명 자회 사 ABA금융서비스 와의 경영지원 서비 스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험대리점계약 체결 및 임차 지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비등기임원 신 규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적용 유예 연장									
아. 내부통제기준 운영 규정 개정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및 기준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 전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부문은 크게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 세 부문으로, 평가항목은 이사회 8개(27개 설문), 위원회 별 각 7개(38개 설문), 이사회평가 관련 항목 1개(2개 설문)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사회 평가점검 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준, 이사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되고, 평가점수는 5점 만점기준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이 항목별로 5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행정업무는 지원 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제,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018년도에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의장으로 순레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순레이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 및 경영에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사내/사외이사 간 균형, 이사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선임 한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사는 2018년 3월 이사회에서 량폐이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량폐이 사외이사는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한 다국적 회사자문업무 등으로부터 축적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이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정관 제32조 ③).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7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함)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임원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검증된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임원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2018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5명의 사외이사 후보, 3명의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검증된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하였고,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6.6%로, 이는 각 위원이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 등의 사항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2018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	------------------	------	-----	-------

량페이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17.2.15.	2019.3.29
텐링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7.2.15.	2019.3.29
짜오홍	비상임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7.2.15.	2018.3.29
왕루이	사내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8.3.30.	2019.3.29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원후보로 추천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임원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 후보가 관련 법규 및 정관,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임원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군의 발굴 및 자격검증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부의 등은 인적자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자원실의 임원 후보선정 및 예비 후보 관련 자료 제출
- 대표이사의 검토 및 주주에게의 보고
- 주주의 사전 승인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의 부의
- 예비 후보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 및 의결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임원후보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및 임원후보 평가방법, 주기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제36조, 제43조 등).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적법하고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결의안건 2개이며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8. 3. 30. 개최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선임을 위해 관계법령과 당사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5명의 후보자(텐링, 지앙팅루, 량페이, 이창수, 박상래)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3명의 후보자(텐링, 지앙팅루, 박상래)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2018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8년 3월 30일 오전 10시 00분]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량페이	텐링	짜오홍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텐링)	찬성	찬성	불참	가결
가-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지앙팅루)	찬성	찬성	불참	가결
가-3.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량페이)	찬성	찬성	불참	가결
가-4.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이창수)	찬성	찬성	불참	가결
가-5.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박상래)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나-1.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텐링)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나-2.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지앙팅루)	찬성	찬성	불참	가결
나-3.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박상래)	찬성	찬성	불참	가결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준,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텐링,

출생연도: 1969년

출신학교: 독일 아헨공과대학 박사

미국 워싱턴대학 시애틀 캠퍼스연수

경력: 우한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보험과 학과장

귀위안 농업보험 독립이사

우한 우상그룹 독립이사

(2) 성명: 지양팅루

출생연도: 1979년

출신학교: 대만국립대학교 심리학사

대만국립대학교 기업조직심리학 석사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워싱턴대학교 경영관리 박사

경력: 북경대학교 광화 경영대학원 조교수

워싱턴 마이클 포스터 경영대학원 강사&연구원/조교

대만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조교

(3) 성명: 박상래

출생연도: 1958년

출신학교: 동국대학교 통계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보험경영학 석사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보험상품위원회 위원

한국보험계리사협회 회장

보험개발원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후보자 텐링, 지양팅루, 박상래의 제안자는 당사 대주주인 안방보험그룹입니다.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인 안방보험그룹은 각 감사위원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텐링은 우한대학 경제경영대학 보험학과 학과장을 역임하고 중국 보험학회 부사무총장 등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 제안하였습니다.

후보자 지양팅루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북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며 다년간 비즈니스 컨설팅 경력을 가지고 있는바, 풍부한 금융/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박상래는 보험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보험회사, 보험개발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보험상품/계리부문에 특히 폭넓은 식견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기에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 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2018년 2월 당사는 안방보험그룹 추천을 통해 텐링, 지양팅루, 박상래를

후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후보자들은 2017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감사위원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동 후보자들은 2017년 2월 15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하였고, 감사위원으로써 그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안방보험그룹으로부터 2018년 2월에 다시 추천받아,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근거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후보자들은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한 임원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후보자들은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함과 더불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후보자들은 지배구조법령 제시하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 텐링, 지앙팅루, 박상래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텐링, 지앙팅루, 량페이, 박상래, 이창수

- (2) 출생연도 : 텐링 - 1969년
 지앙팅루 - 1979년
 량페이 - 1963년
 박상래 - 1958년
 이창수 - 1959년

(3) 출신학교

성명	출신학교
텐링	독일 아헨공과대학 박사 미국 워싱턴대학 시애틀 캠퍼스연수
지앙팅루	대만국립대학교 심리학사 대만국립대학교 기업조직심리학 석사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워싱턴대학교 경영관리 박사
량페이	북경대학교 법학사 북경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상래	동국대학교 통계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보험경영학 석사
이창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통계학사 아이오와주립대 계리학 석사 아이오와주립대 계리학 박사

(4) 경력 및 사외이사 경력

성명	일반경력	타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텐링	우한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보험과 학과장 귀위안 농업보험 독립이사 우한 우상그룹 독립이사	귀위안농업 보험그룹
지앙팅루	북경대학교 광화 경영대학원 조교수 워싱턴대학교 마이클 포스터 경영대학원 강사, 연구원/조교, 대만 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조교	해당없음
량페이	룬밍법률사무소, 통상법률사무소 모토로라,야신,스파키즈,애질런트,인텔,알스톰법률자문 권허법률사무소, 징토펀법률사무소 스캐든 압스 뉴욕본사 중국석화국제사업회사, 베이징 법률고문	해당없음
박상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보험상품 위원회 위원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 보험개발원 근무	해당없음
이창수	숭실대학교 보험계리학 교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의장 보험개발원 연구부문장	DB저축은행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후보자 텐링, 지양팅루, 량페이, 박상래, 이창수의 제안자는 당사 대주주인 안방보험그룹입니다.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인 안방보험그룹은 각 사외이사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텐링 사외이사는 경제경영대학 보험학과 학과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 제안하였습니다.

후보자 지양팅루 사외이사는 북경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심리학과와 기업조직심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입니다. 또한 실무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량페이 사외이사는 북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률사무소 근무와 다수의 글로벌기업 근무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박상래 사외이사는 국내 유명대학 보험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으로 생명보험회사 및 보험개발원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각종 법률적 지식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하였습니다.

후보자 이창수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통계학을 수학하고,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계리학을 전공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또한 숭실대학교 보험계리학 교수와 보험개발원 연구부문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2018년 2월 당사는 텐링, 지양팅루, 량페이, 박상래, 이창수를 후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후보자들은 2017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5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동 후보자들은 2017년 2월 15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당사 사외이사 담당하였고, 사외이사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안방보험그룹으로부터 2018년 2월에 다시 추천받아,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근거로 사외이사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후보자 텐링, 지양팅루, 량페이, 박상래, 이창수는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각 후보자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3항은 사외이사(후보자)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텐링, 지앙팅루, 량페이, 박상래, 이창수 사외이사 후보는 국내외 우수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또는 기업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과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요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텐링, 지앙팅루, 량페이, 박상래, 이창수 사외이사후보는 국내외 우수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또는 기업에 재직중인 전문 후보자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업무 이외 당사 및 기타 금융기관, 임원과 관계가 전무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사회적으로도 현 근무지에서도 평판이 우수하며, 작년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임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충실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모든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에 적극 참석하고 해당 의안 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연간 약 80~100여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각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각 후보자들은 지배구조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모두 소명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 텐링, 지양팅루, 량페이, 박상래, 이창수에 대한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8년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텐링, 지양팅루, 량페이, 박상래, 이창수 총 5명이며,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아 각 1년씩 연임되었습니다.

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외부자문기관과 주주로부터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윤리적 자격 요건을 갖춘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가) 제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2018. 2. 27. 10: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양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ABL글로벌자산 운용과의 일반계정 투자일임운용 계약 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ABL글로벌자산 운용과의 변액계정 투자일임계약 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 2018. 3. 30. 13: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양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가. FY2017 선임계 리사검증의견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나. FY2017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용실 태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다.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평 가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라. 이사회평가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의결 안건							
	가.제65기(2017.1.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12.31.)결산 보고서							
나.2018년사업계획 및 예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정기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8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18. 3. 30. 15: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4. 이사 성명		이창수	박상래	텐팅	지양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금융감독원 RAAS 부문검사 결 과 및 조치 내용 요약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나. 신용정보보호관 리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 New IFRS (IFRS17 & IFRS9) project 진행상황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라. 2017 AML 보고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마. 2017년 하반기 사규(규정) 제·개 정 현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4. 의결 안건							
가. 2018년도 이사 회 의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도 선임 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회 내 위원 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주요업무집행책 임자 연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법무실장 및 준 법감시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콜센터 아웃소 싱업체 선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18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18. 4. 5. 9: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앙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18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2018. 7. 11. 15: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앙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IFRS Project 진행상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4. 의결 안건						
가. ABL, 동양생명 계열사간 거래(당사 보유 부동산에 대한 동양생명과 임대차계약 체결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18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 2018. 9. 13. 14: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앙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IFRS Project 진행상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나. 2018년 상반기 사규(규정) 제·개정 현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4. 의결 안건							
	가.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18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18. 11. 15. 13: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앙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IFRS Project 진행상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4. 의결 안건							
	가.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즉시연금(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처리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2018년도 제8차 정기이사회 : 2018. 12. 13. 13: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수	박상래	텐링	지앙팅루	량페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2018년도 소송 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나. 2018년 내부통제체계·운영 실태점검 결과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 평가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라. 2018년 AML (자금세탁방지) 평가 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마. New IFRS (IFRS17& IFRS9) Project 진행상황보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4. 의결 안건							

가. ABL생명 자회사 독립법인대리점 사업 계획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PA채널사업종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ABL생명 자회사 독립법인대리점 추가 출자 지분 취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ABL생명자회사 ABA금융서비스와의 경영지원 서비스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험대리점계약 체결 및 임차 지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적용 유예 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내부통제기준 운영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8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8. 3. 30. (금) 10: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량페이	텐링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없음	없음	
4.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텐링)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지양팅투)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량페이)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이창수)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박상래)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텐링)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지양팅루)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박상래)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

2018년 제1차 감사위원회 2018. 3. 15. (목) 10:0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지양팅루	박상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나. 제65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외부감사인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다.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라. Compliance 활동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마. FY2017 결산감사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사. 내부감사 활동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아. 금융감독원 RAAS 부문검사 결과 및 조치내용 요약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FY2017 결산승인 (제65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FY2018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8 연간 감사계획(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제2차 감사위원회 2018. 6. 14. (목) 10:3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지양팅루	박상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나. 내부감사 주요 활동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의결 건 없음				

2018년 제3차 감사위원회 2018. 9. 13. (목) 10:0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지양팅루	박상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나. 내부감사 주요 활동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내부감사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8년 제4차 감사위원회 2018. 12. 13. (목) 09:3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지양팅루	박상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다. 내부감사 활동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라. 자금세탁방지 평가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마.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평가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FY2019~2021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통제기준 운영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라) 위험관리위원회

2018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18. 3. 30. (금) 18:3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이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논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년 RBC 결과 및 관리방안	특별한 의견 없음		
	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준비	이창수 위원은 K-ICS 신규위험 요구자본 수준 및 위험경감 방안에 대해 질의함		
	다. 유지율 개선 계획	특별한 의견 없음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 Top Risk 평가결과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나. 2017년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다. 2017년 RAAS 계량평가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라. 2017년 4분기 위험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5.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도 파생상품 운용전략의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다. 2018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승인	찬성	찬성	가결
	라. 2018년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마. 2018년도 주요위험평가 대상 선정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18. 6. 14. (목) 15:0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이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논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8년 1분기 RBC현황 및 관리방안	이창수 위원은 2018년 RBC비율 하락 예상 수준 및		

		경영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함	
	나. 대체투자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 한도	이창수 위원은 무등급 대체투자 자산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질의함	
	다. 2018년 상품개발현황	특별한 의견 없음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8년 1분기 Top Risk 평가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나. ALM 현황	이창수 위원은 현행 RBC 금리민감도와 경제적 관점 금리민감도 간의 상충관계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상충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사의 의견제시 필요성을 언급함	
	다. 2018년 1분기 RAAS 계량평가	특별한 의견 없음	
5. 의결안건			
	가. 2018년도 대체투자 위험한도 재배분 승인요청	찬성	가결

2018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 8. 23. (목) 14:0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이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논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 결과	이창수 위원은 K-ICS 가용자본 증가 방안, 공동재보험과 같은 규제 완화 방안 및 내부모형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질의함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8년 2분기 Top Risk 평가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나. 계약인수기준 변경/신설 사항	특별한 의견 없음		
	다. 2018년 2분기 RBC현황	특별한 의견 없음		
	라. 2018년 2분기 RBC 위기상황분석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마. 2018년 2분기 RAAS 계량평가	특별한 의견 없음		
	바. 2018년 2분기 투자위험한도 모니터링	특별한 의견 없음		

	결과			
5. 의결안건				
	가. 변액 유니버설 중신보험 예정이율 변경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운영위험 관리규정 개정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2018. 12. 13. (목) 17:2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이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8년 상품개발 이행결과	이창수 위원은 상품개발 시 예상 및 실제 판매실적 차이 원인분석 및 그 결과를 향후 상품개발 시 고려할 것을 당부함		
	나. 재보험 현황	이창수 위원은 재보험 전략의 철저한 이행 및 결과 평가를 당부함		
	다. 2018년 3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라. 2018년 3분기 RBC 현황 및 관리방안	특별한 의견 없음		
	마. 2018년 3분기 경영실태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바. 2018년 3분기 투자위험한도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9년도 파생상품운용 전략의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

2018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2018. 4. 5. (목) 09: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지앙팅루	량페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18년도 보수위원회 의장 선임	찬성	찬성	가결
나. 2017년도 성과평가 및 2018년도 성과목표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다. 2017년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라. 2018년도 집행임원 보수총액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마. 임원 성과보너스 환수 규정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바. Retention bonus 지급 승인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2018. 5. 21. (월) 11: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지양팅루	량페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CEO(순레이) 2017년도 성과보너스 지급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2018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2018. 10. 17. (수) 10: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지양팅루	량페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18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제도 변경	찬성	찬성	가결
나. CIO (Wang Rui) Special Bonus 지급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량페이

사외이사 량폐이는 20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보수위원회 3회 중 3회 모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량폐이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년 중 총 8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텐링

사외이사 텐링은 20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4회 모두, 위험관리위원회 4회 모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텐링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년 중 총 10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지양팅루

사외이사 지양팅루는 20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4회 모두, 보수위원회 3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지양팅루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년 중 총 9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박상래

사외이사 박상래는 20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4회중 4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박상래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년 중 총 8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이창수

사외이사 이창수는 20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위험관리위원회 4회중 4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창수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8년 중 총 9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 요약

구분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시간 주1)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명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량폐이	8	8	8							3	3	3	1	1	1	12
텐링	8	8	8	4	4	4	4	4	4				1	1	1	17

지양 텡루	8	8	8	4	4	4				3	3	3				15
박상래	8	8	8	4	4	4										12
이창수	8	8	8				4	4	4							12

주1) 활동시간: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연간 참석횟수

나.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당사는 등기이사, 비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동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등기이사, 비등기임원의 개인부담 보험료는 없으며 연간 100억 원의 보험금을 한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 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해주는 범위로 가입합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텐링	지양텡루	량페이	박상래	이창수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한국 보험업계 현황 및 당사 현황 보고 및 논의 (2018. 3. 30.)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고객 현황 및 상품 판매 현황 (2018. 3. 30.)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당사 디지털 현황 및 IFRS프로젝트 관련 사항 논의 (2018. 3. 30.)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ABL고객 서비스 및 소비자보호 현황 및 전략 (2018. 12. 13.)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4	4	4	4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텐링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보험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게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2) 사외이사 지양팅루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게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적극적으로 참여함

3) 사외이사 량페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법률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게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4) 사외이사 박상래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법률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게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5) 사외이사 이창수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보험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게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이해도, 독립성 등에 대해

매년 1회 사외이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년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 본인과 이사회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선임시 고려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충실성(사외이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기여도(이사회등의 심의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 ③ **평가 절차** :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에게 평가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평가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실시합니다 .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18년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사외이사 본인에 의한 평가 및 지원부서의 내부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기타	
텐링	10	10	10	10	9.5	
지앙팅루	10	10	10	10	9.5	
량페이	10	10	10	10	9.5	
박상래	9	8.5	10	9	10	
이창수	9.5	10	10	10	9.75	

3) 외부평가

가) 외부평가 개요

외부 평가는 향후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적절한 평가 기관이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량페이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을 위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달하고,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부서명 : 인사관리부
- 직원수 : 총 9
- 부서장(총괄) 1명, 차장 4, 과장3, 사원 1명
- 지원내용 :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교육지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 등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량페이

가) 재직기간

2018. 3. 30. ~ 2019. 3. 29.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42,000,000원	월3,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0	
	기타 수당	7,800,000원	이사회,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선임사외이사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2) 사외이사 텐링

가) 재직기간

2018. 3. 30. ~ 2019. 3. 29.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42,000,000원	월3,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0	
	기타 수당	3,200,000원	이사회, 위원회 참석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3) 사외이사 지양팅루

가) 재직기간

2018. 3. 30. ~ 2019. 3. 29.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42,000,000원	월3,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0	
	기타 수당	3,000,000원	이사회, 위원회 참석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4) 사외이사 박상래

가) 재직기간

2018. 3. 30. ~ 2019. 3. 29.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42,000,000원	월3,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0	
	기타 수당	2,900,000원	이사회, 위원회 참석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의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의제공		

5) 사외이사 이창수

가) 재직기간

2018. 3. 30. ~ 2019. 3. 29.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42,000,000원	월3,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0	
	기타 수당	2,900,000원	이사회, 위원회 참석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의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의제공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김범	2010. 6.25	2015. 6.24	60 개월	감사위원회 (2010.6.25.~2013.6.2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0.6.25.~2013.6.24.) 리스크관리위원회 (2013.6.25.~2015.6.24.) 보수위원회 (2014.1.22.~2015.6.24.)		숭실대학교 교수
한민	2011. 1.22	2016. 1.31	60 개월	감사위원회 (2011.1.22.~2016.1.31.)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011.1.22.~2015.1.21.) 보수위원회 (2011.1.22.~2014.1.21.) (2015.6.25.~2016.1.31.)	감사위원회 위원장 (2015.1.22.~2016.1.31.) 선임사외이사 (2012.7.19.~2016.1.31.)	이화여대 교수
김재현	2011. 4.3	2016. 4.2	60 개월	감사위원회 (2012.7.24.~2016.4.2.) 리스크관리위원회 (2012.7.19.~2013.6.24.) (2015.6.25.~2016.4.2.) 보수위원회 (2012.7.24.~2015.1.21.) (2016.2.1.~2016.4.2.)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015.1.22.~2016.1.31.)		상명대학교 조교수
조강필	2012. 9.1	2017. 2.15.	54 개월	감사위원회 (2013.6.25.~2017.2.15)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3.6.25.~2016.4.2.) 보수위원회 (2015.1.22.~2017.2.15) 리스크관리위원회 (2015.6.25.~2017.2.15)	선임사외이사 (2016.2.1.~2017.2.15.)	충북대 국 제 경 영 학 교수
강원순	2015. 7.18	2017.02. 15.	19 개월	감사위원회 (2016.2.1.~ 2017.2.15.) 리스크관리위원회 (2016.4.3.~ 2017.2.15.)		카이스트 초빙교수
윤영신	2016. 4.3	2017.2.1 5.	11 개월	보수위원회 (2016.4.3.~ 2017.2.15.)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4.3.~ 2017.2.15.)	임원후보추천위원장 (2016.4.3.~2017.2.15.)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
박세민	2016. 4.3	2017.2.1 5.	11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4.3.~ 2017.2.15.) 감사위원회 (2016.4.3.~ 2017.2.1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

텐링	2017. 2.15	2019. 3.29	22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2.15.~현재) 감사위원회 (2017.2.15.~현재) 위험관리위원회 (2017.2.15.~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2017.2.15.~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 (2017.2.15.~현재)	우한대학교 교수
지양팅루	2017. 2.15	2019. 3.29	22 개월	감사위원회 (2017.2.15.~현재) 보수위원회 (2017.2.15.~현재)	보수위원회위원장 (2017.2.15.~2018.3.29)	북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조교수
량페이	2017. 2.15	2019. 3.29	22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2.15.~현재) 보수위원회 (2017.2.15.~현재)	선임사외이사 (2017.2.15.~현재)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17.2.15.~2018.3.29)	통상법률사무소
박상래	2017. 2.15	2019. 3.29	22 개월	감사위원회 (2017.2.15.~현재)		보험계리사협회 회장
이창수	2017. 2.15	2019. 3.29	22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2017.2.15.~현재)		승실대 보험계리학 교수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적합한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배구조법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5조에서부터 제53조까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대한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경영승계절차, 비상상황 시 경영승계절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 추천관련 공시, 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최고경영자의 평가 및 퇴임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하였습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7조에 따라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이사회는 경영승계사유, 개시일자, 결정시기 등을 결정하고,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게 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9조

- 평가

순레이 후보자는 당사의 현재 대표이사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당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전반업무를 총괄하며,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

2017년 6월 29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순레이 후보자는 2013년 당사에 입사하여 CFO로 3년 동안 재무부문 업무를 총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거치는 동안 회사의 주요 비용절감 및 철저한 재무관리를 통해 재무지표 개선 등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순레이 후보는 당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당사의 CEO로 요구되는 금융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순레이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과 직무수행 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2017년 6월 29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당사의 최고경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후보자 순레이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해 2017년 6월 2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2명의 찬성으로 순레이를 최종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후보자 순레이는 2017년 6월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로 선임되어 2018년 12월 현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경영승계절차 운영현황> - 2018년도 해당 없음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7.6.29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결과 검토 최종후보자 결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6.29	등기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총회 부의	임시 주주총회
2017.6.29	최고경영자 선임	제7차 이사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수립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괄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

중,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해당사항 없음

바.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지원부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승계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인적자원실을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로 지정할 예정이며, 동 부서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외에도 인사관리, 성과평가, 직원개발, 교육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예정)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적자원실 인사관리부, 인재개발부
- 직원수 : 총 13명
- 담당자 : 총괄1명, 부서장 2명, 차장 5명, 과장 4명, 사원 1명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그 역할 등에 관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내부

감사규정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현안과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업무집행 전반을 독립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 감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경영전문가, 리스크 및 회계전문가 등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건에 대한 감독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에 직접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하거나 감사보조조직에 위임된 일상감사업무의 보고수령을 통해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 절차의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8년도 총 8회 개최된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에 감사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고, 2018년 전체 206건 일상감사업무에 대해 총 17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지배구조법 제20조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및 해당부서에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또는 변상,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피감사 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감사실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 차기 감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프로세스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전문성과 적정성 등 선임(연임)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2018년 3월 관계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거 삼정회계법인(KPMG)을 FY2018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복수의 Global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수행, 2018년 12월 13일 감사위원들의 대면회의 및 평가를 통해 삼정회계법인(KPMG)을 FY2019~2021 3개년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문서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3명)이 사외이사로 구성 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조조직의 장(감사실장)에 대한 임면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및 별첨2). 감사위원회는 법령, 정관 또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서 정한 고유권한을 제외하고 내부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및 운영을 위해 감사실장에게 내부감사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8년 3월 15일에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된 “2018년 내부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종합/부문/특별감사 내용 등에 대해 매분기 “내부감사 활동보고”를 통해 그 결과와 조치 의견을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사항 중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조조직을 통하여 회계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및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가 당사의 FY2017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 03월에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회는 FY2017년 결산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LAT 규정 개정에 따른 2015년~2017년 재무적 Impact 등에 대해 질의하여 재무담당 집행임원으로 부터 이에 관한 설명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받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에 개최된 감사위

원회는 재무담당임원으로부터 점검 항목의 선정 및 통제활동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마) 기타(내부통제 주요활동 보고 수령 등)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점검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5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및 별첨2).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 내부통제교육 실시현황, 사규체계 재정비 등 주요 업무현황과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신고 운영현황 등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한 내부통제점검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 밖에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규에서 내부감사의 운영 및 통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연간 및 중장기 내부감사계획 심의 및 의결, 감사규정의 제·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내부감사 연간감사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 중 3분의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의장은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지배구조법 제19조, 상법 제415조의2, 보험업법 제1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4조).

당사 감사위원회는 2018년말 현재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2013년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한 이래 계속하여 감사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경영진 등의 직무를 독립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포함)은 보험업 관계 법령과 정관,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임원의 자격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특히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018년말 현재 당사 감사위원 3명은 보험분야, 재무분야, 경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 등에 부합되게 선임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텐링	사외	현)위원장	'17.2.15.	'19.3.29.
지앙팅루	사외	현)위원	'17.2.15.	'19.3.29.
박상래	사외	현)위원	'17.2.15.	'19.3.29.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년에는 총 4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전년도 개최횟수 보다 1차례 더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전년과 비슷하나 감사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자료는 본회의 개최 수일 전에 미리 배포되었고 감사위원들은 사전에 대략적인 설명을 추가로 들었으며, 참석 감사 위원은 사안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실효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8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18.03.15.(10:00)

[안전 통지일 : 2018.03.12.]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지앙팅루	박상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실태보고 ¹⁾	특별한 의견 없음			
	나. 제65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외부감사인 보고 ²⁾	특별한 의견 없음			
	다.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 보고 ³⁾	특별한 의견 없음			
	라. Compliance 활동 보고 ⁴⁾	특별한 의견 없음			
	마. FY2017	특별한 의견 없음			

	결산감사 보고 ⁵⁾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⁶⁾	특별한 의견 없음	
	사. 내부감사 활동 보고 ⁷⁾	특별한 의견 없음	
	아. 금융감독원 RAAS 부문검사 결과 및 조치내용 요약 보고 ⁸⁾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FY2017 결산승인(제65기) 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FY2018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요청 ¹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8 연간 감사계획(안) 승인 ¹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외감법에 따른 재무회계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현황 보고
- 2)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KPMG) 임원의 FY2017 회계연도 감사결과 보고
- 3) FY2017 회계연도에 대한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 잉여금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 계약자 배당금 계산의 적정성 및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검증 의견
- 4)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수령
- 5) 내부감사의 FY2017 결산감사 보고
- 6) 감사보조조직의 FY2017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보고
- 7) 2017.11월~2018.02월까지 사이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 8) 2017년 금융감독원 RAAS 부문검사 결과 및 조치내용 요약 보고
- 9)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에 의거 FY2017 결산승인(제65기) 자료 제출 보고
- 10) FY2018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KPMG 선임 요청
- 11) 2018 내부감사 연간감사계획(안) 승인

나) 제2018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18.06.14.(10:30)

[안건 통지일 : 2018.06.07.]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지양팅루	박상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¹⁾	특별한 의견 없음			

	나. 내부감사 주요 활동 보고 ²⁾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의결 건 없음				

비고

- 1)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수령
- 2) 2018.03월~2018.04월까지 사이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다) 제2018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18.09.13.(10:00)

[안건 통지일 : 2018.09.04.]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지앙팅루	박상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¹⁾	특별한 의견 없음			
	나. 내부감사 주요 활동 보고 ²⁾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내부감사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³⁾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수령
- 2) 2018.05월~2018.07월까지 사이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 3) 일상감사 대상업무 일부 조정관련 내부감사 규정 개정(안) 승인

라) 제2018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18.12.13.(09:30)

[안건 통지일 : 2018.12.07.]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지앙팅루	박상래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¹⁾	특별한 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체계	특별한 의견 없음			

	운영실태 보고 ²⁾				
	다. 내부감사 활동보고 ³⁾	특별한 의견 없음			
	라. 자금세탁방지 평가 보고 ⁴⁾	특별한 의견 없음			
	마. 내부통제체계 · 운영실태 평가 보고 ⁵⁾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FY2019~2021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⁶⁾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통제기준 운영규정 개정(안) ⁷⁾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수령
-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5항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정책 제14조(회사 내 각 구성원 및 기관별 역할과 책임) 제2항에 의거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 현황 보고
- 3) 2018.08월~2018.10월까지 사이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 4)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
- 5) 준법감시인이 보고한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고
-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FY2019~2021 외부감사인 선정
- 7)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최종 법규 문구의 반영 내용에 부합되도록 내부통제기준 운영규정을 심의하고 개정함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감사 품질평가과정에서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의 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삼정 KPMG와 감사위원회가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1) 감사보조조직 설치현황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보조조직으로서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실(감사부)을 설치해 두고,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내부감사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보조조직의 장인 감사실장에 위임하여 그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감사실장은 본인 주관 하에 내부감사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부 직원인 내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되 총괄적인 관리책임과 내부감사 품질의 적정성을 유지합니다. 감사부는 2018년말 현재 전체 8명(감사부장 포함)의 내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 외부전문가 활용 내역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 및 제415조의2).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2018년말 현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재해리스크 등)을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위험관리 업무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전사적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며 위험관리지표의 승인 및 허용한도 설정, 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적정 투자 한도 및 손실 허용 한도의 승인,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위험관련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하에 위험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세부 위험카테고리별 관련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위험관리협의회와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모델의 생성, 운영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는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을 내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 원칙, 위험관리 조직, 위험관리 체계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 등 제반 위험에 대하여 중장기적 회사가치의 증대와 고객의 이익 제고의 관점에서 개별 위험 및 위험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 개최한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및 2018년 12월 13일 개최한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자본 적정성, 자산 부채 관리, 운영위험관리에 대한 2018년 위험전략 및 2019년 위험전략에 대해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2018년 3월 30일 개최된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및 2018년 12월 13일 개최한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2018년 및 2019년 자본적정성 요구사항, 투자위험한도, 파생상품 운용전략에 대해 승인하였고, 2018년 8월 23일 개최된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상품 예정이율 변경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승인된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매분기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이슈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2018

년 8월 23일 개최된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의 운영위험 관리규정의 개정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운영위험 관리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2018년도 말 기준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3명(텐링, 순레이, 이창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명(텐링, 이창수)의 위원이 사외이사입니다.

2018년 3월 30일 개최된 2018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텐링 사외이사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금융, 경영, 경제, 회계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당사의 제반 위험관리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텐링	사외	현)위원장	2017.02.15.	2019.03.29
이창수	사외	현)위원	2017.02.15.	2019.03.29
순레이	상임	현)위원	2017.06.30.	2020.06.29.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년에는 총 4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100%입니다.

그 중 3월에 개최된 2018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신입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2018년도 파생상품운용전략, 위험성향 및 위험한도, 투자위험 한도 및 주요위험평가 대상선정에 대하여, 6월에 개최된 2018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대체투자 위험한도 재배분에 대하여, 9월에 개최된 2018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예정이율 변경 및 운영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하여, 12월에 개최된 2018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파생상품운용전략, 위험성향 및 위험한도, 투자위험 한도에 대

하여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8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 3. 30. (18:30)

[안전 통지일 : 2018. 3. 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순레이	이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있음 ²⁾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도 파생상품 운용전략의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8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8년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8년도 주요위험평가 대상 선정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논의안건: 2017년 RBC 결과 및 관리방안,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준비, 유지율 개선 계획

보고안건: 2017 Top Risk 평가결과, 2017년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2017년 RAAS 계량평가, 2017년 4분기 위험한도 모니터링 결과

2) 이창수 위원은 논의안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준비 관련, K-ICS 신규위험 요구자본 수준 및 위험경감 방안 에 대해 질의함

나) 제2018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 6. 14. (15:00)

[안전 통지일 : 2018. 6. 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순레이	이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있음 ²⁾	
4. 의결안건				
가. 2018년도 대체투자 위험한도 재배분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논의안건: 2018년 1분기 RBC 현황 및 관리방안, 대체투자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 한도, 2018년 상품개발

현황

보고안건: 2018년 1분기 Top Risk 평가결과, ALM 현황, 2018년 1분기 RAAS 계량평가

2) 이창수 위원은 논의안건 2018년 1분기 RBC 현황 및 관리방안 관련, 2018년 RBC비율 하락 예상 수준 및 경영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함, 논의안건 대체투자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한도 관련, 무등급 대체투자 자산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질의함, 보고안건 ALM 현황 관련, 현행 RBC 금리민감도와 경제적 관점 금리민감도 간의 상충관계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상충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사의 의견제시 필요성을 언급함

다) 제2018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 8. 23. (14:00)

[안건 통지일 : 2018. 8. 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순레이	이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있음 ²⁾	
4. 의결안건				
가.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예정이율 변경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운영위험 관리규정 개정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논의안건: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 결과

보고안건: 2018년 2분기 Top Risk 평가결과, 계약인수기준 변경/신설 사항, 2018년 2분기 RBC현황, 2018년 2분기 RBC 위기상황분석 결과, 2018년 2분기 RAAS 계량평가, 2018년 2분기 투자위험한도 모니터링 결과

2) 이창수 위원은 논의안건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 결과 관련, K-ICS 가용자본 증가 방안, 공동재보험과 같은 규제 완화 방안 및 내부모형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질의함

라) 제2018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 12. 13. (17:20)

[안건 통지일 : 2018. 12. 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텐링	순레이	이창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있음 ²⁾	
4. 의결안건				
가. 2019년도 파생상품운용 전략의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도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2018년 상품개발 이행결과, 재보험 현황, 2018년 3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 2018년 3분기 RBC현황, 2018년 3분기 경영실태평가 결과, 2018년 3분기 투자위험한도 모니터링 결과

2) 이창수 위원은 보고안건 2018년 상품개발 이행결과 관련, 상품개발 시 예상 및 실제 판매실적 차이 원인 분석 및 그 결과를 향후 상품개발 시 고려할 것을 당부함, 보고안건 재보험현황 관련, 재보험 전략의 철저한 이행 및 결과 평가를 당부함

3) 평가

당사는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 ·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험관리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 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8. 경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경영위원회는 사장, 부문장의 각 담당부문의 경영, 재무, 영업, 인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각 단위조직의 장(전결권자)이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및 내부 사규에 의하여 부여 또는 위임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 재무, 투자, 인사, 영업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그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하되 필요시 변경 또는 생략하며, 현재 사내 이사(CEO, CIO)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추가예산 (5,000만원 이상)

당사 경영위원회는 5,000만원 이상의 추가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6건의 추가예산 편성을 승인하였

습니다.

나) 투자정책수립 및 결정

당사 경영위원회는 투자규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산운용전략부 및 특별계정운용팀의 전략적인 자산배분과 전술적인 자산배분의 한도를 승인합니다. 경영위원회는 2018년에 제13차(2018년 SAA 및 ALM전략 승인 요청)회의에서 투자정책수립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1건 승인하였습니다.

다) 투자정책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사항

당사 경영위원회는 투자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투자위원회의 주요 승인사항을 승인하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투자정책 및 규정에 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니다.

라) 계약자 배당률 결정 및 산출

당사 경영위원회는 배당금이 있는 보험상품의 계약자 배당률 결정 및 산출에 대하여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018년 제4차(FY2018 계약자배당 승인 요청)회의에서 계약자 배당 안건 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마) 최선의 추정 가정 설정

당사 경영위원회는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최선의 추정 가정 (Best Estimate Assumption) 설정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018년에 제3차(2017 최적가정 승인요청)회의에서 최선의 추정가정 설정에 대한 안건 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바) 임원의 해임을 수반하지 않는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폐쇄/통합, 실의 하위조직(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폐쇄/통합

당사 경영위원회는 본사 각 부서, 외야 지역단 및 고객센터 등 조직의 신설, 폐쇄 및 통합 등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11건의 조직의 신설/폐쇄/통합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사) 조직(실/부서) 명칭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본사 실 및 부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018년 1건의 조직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아) 실간 업무분장 변경/조정

당사 경영위원회는 영업부문, 재무부문, 운용부문 및 기타 CEO 직속 부문 간의 업무분장 변경 및 조정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3건의 부문간 업무분장 변경/조정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자) 1억 5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 승인/폐지 (아웃소싱 포함)

당사 경영위원회는 1억 5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 등을 승인하거나 폐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경영위원회의 최초 승인을 득한 후 주기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한 회당 5억원 미만의 비용이 수반되고, 거래조건을 포함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 갱신되는 사업 및 기타 경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갱신 시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갱신은 제외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위원회 승인 대상 안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경영위원회는 2018년 본 호와 관련하여 모두 23건의 1억 5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 승인/폐지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차) 상품개발/ Repricing

당사 경영위원회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및 상품 Repricing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14건의 상품개발 및 변경 안건을 승인하고, 총 2건의 상품 변경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카) 채널 Brand name/CI 개발 및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영업채널의 Brand name, 회사 CI (Corporate Identity)의 개발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채널 Brand name/CI개발 안건에 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니다.

타) 장단기 영업전략 및 정책 수립/기준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장·단기 영업전략, 영업정책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회사의 장·단기 영업전략의 수립 및 기준 변경에 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니다.

파) 영업수당체계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업수당체계(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18년 영업수당체계 변경에 대한 안건 3건을 승인하였습니다.

하) Agent를 위한 행사/선물/시책 (1억원 이상)

당사 경영위원회는 모집종사자의 영업활성화, 모집종사자 리크루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 선물제공 또는 시책 등의 시행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집니다. Agent를 위한 행사/선물/시책을 경영위원회의 승인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와 같은 행사/선물/시책 제공의 합리적 이유, 지급기준의 공정성, 비용 대비 효과 및 환수 등을 통한 리스크 예방 등에 대하여 영업부문장보다 상위의 의사결정권자의 통제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23건의 Agent를 위한 행사/선물/시책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거) 영업직원 보상제도 등의 신설 및 주요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수수료 및 시책을 제외한, 영업직원의 기타 보상제도 등의 신설 및 주요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18년 영업직원 보상제도 신설 및 주요변경에 대한 안건 4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너) 영업채널의 연도평가 등 주요 행사

당사 경영위원회는 FC, PA, GA, BA 각 영업채널이 진행하는 연도평가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1건의 영업채널의 연도평가 등 주요 행사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더) 비등기임원 승진/보직변경/연임/갱신/해임 외 징계

(이사회 보고, 징계Process는 인사 규정 준용)

당사 경영위원회는 비등기임원의 승진, 보직변경, 연임, 갱신, 해임 및 징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집니다.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6건의 비등기임원의 연임, 승진 및 징계를 승인하였습니다.

러) 직원 정기 승진 및 임금인상/표창/징계, 명예(특별)퇴직

당사 경영위원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기 승진, 임금인상, 표창 및 징계 등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9건의 직원 정기 승진 및 표창, 징계 안건을, 직원의 명예(특별)퇴직에 대한 안건 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며)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취득/매각/업체선정

당사 경영위원회는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비용이 수반되는 부동산의 취득/처분, 1억 5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비용이 수반되는 기타자산의 취득/처분을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2018년에는 이에 관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버) 재보험 계약의 체결/해지

당사 경영위원회는 재보험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승인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2건의 재보험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서) 채널별/상품별 수수료 지급률 결정

당사 경영위원회는 각 영업채널별 및 각 보험상품별 수수료 지급률 결정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집니다.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2건의 채널별 DC지급률 결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어)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당사 경영위원회는 사장, 부문장의 각 담당부문의 경영, 재무, 영업, 인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각 단위조직의 장(전결권자)이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및 내부 사규에 의하여 부여 또는 위임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위 (가)내지 (서)에서 정한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나. 구성(경영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8조). 2018년말 현재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장(CEO) 운용부문장(CIO) 2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영업부문, 재무부문, 운용부문 및 CEO 직속 부문의 직무를 관리·감독할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사장이 맡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 상품, 법무, 인사, 고객 및 디지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을 읍저버로 두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순레이	상임	현)위원장	2017.06.30. ¹⁾	2020.06.29.
왕루이	상임	현)위원	2018.03.30. ²⁾	2019.03.29.

1) 최초 선임일 2013.11.01.

2) 최초 선임일 2017.02.1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년에는 총 41회의 경영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경영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참석율은 91.17%입니다.

경영위원회는 2018년 총 12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승인안건은 119건, 보고안건은 8건입니다(승인안건 중 1건이 부결(보류)되는 등 경영위원회를 통해 당사의 중요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 및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8년도 제1차 경영위원회 : 2018. 1. 8.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 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예산관리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사업 승인 및 2017년도 안내장 발송을 위한 예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NGS 데이터 소팅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갱신 사업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8년도 제2차 경영위원회 : 2018. 1. 15.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의결 안건				
가. 영업채널 오버라이드 지급 규정 개정	찬성	찬성	-	가결

(다) 제2018년도 제3차 경영위원회 : 2018. 1. 29.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 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17년 시책 성과 분석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GA채널 2018.2~3월 신계약 시책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 디지털 마케팅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8년 2월 신상품 및 변경상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7 최적가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선임계리사직무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선물 및 접대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18년도 제4차 경영위원회 : 2018. 2. 5 10:00

[안건 통지일 : 2018 2. 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FY2018 계약자배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 인터넷채널 사업 계획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18년도 제5차 경영위원회 : 2018. 2. 12 10:00

[안건 통지일 : 2018. 2. 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	----------	--	--	-------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18년 4-6월 Recruiting Campaign(plan)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 제1차 인사위원회 결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18년도 제6차 경영위원회 : 2018. 2. 26. 10:00
[안건 통지일 : 2018. 2. 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년 하반기 사규(지침) 제·개정 현황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8년 1월 GA채널 시책 초과 집행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 3월 신상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18년도 제7차 경영위원회 : 2018. 3. 5. 10:00
[안건 통지일 : 2018. 3. 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의결 안건				
가. 노후화된 데이터 센터 설비 교체사업	찬성	-	찬성	가결

(아) 제2018년도 제8차 경영위원회 : 2018. 3. 12 10:00
[안건 통지일 : 2018. 3. 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18년 VIP고객 마케팅 활동 사업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비등기 임원 임기연장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8년 신 인센티브제도 시행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제2018년도 제9차 경영위원회 : 2018. 3. 19. 10:00
 [안전 통지일 : 2018. 3. 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우편물제작 및 발송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찬성	참석	찬성	가결
나. 2018년 4-5월 환산월납 목표달성 시책	찬성	참석	찬성	가결
다. 2018년 4-6월 우수경력 신인FC 지원시책	찬성	참석	찬성	가결

(차) 제2018년도 제10차 경영위원회 : 2018. 3. 26. 10:00
 [안전 통지일 : 2018. 3. 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18년 2Q 신계약 시책	찬성	-	찬성	가결
나. 일중 당좌대출 약정 체결	찬성	-	찬성	가결
다. 2018년 4월 신규 특약 및 변경상품	찬성	-	찬성	가결

(카) 제2018년도 제11차 경영위원회 : 2018. 3. 28. 15:00
 [안전 통지일 : 2018. 3. 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18 Grade 승진 승인요청	찬성	-	찬성	가결

--	--	--	--	--

(타) 제2018년도 제12차 경영위원회 : 2018. 4. 2. 10:00

[안전 통지일 : 2018. 3. 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18년 FC명예이사 위촉 및 특별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PA채널 조직 안정화 지원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8. PA채널 Recruiting Campaign변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방카슈랑스사업부 2018년 영업지원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8년 정보보안 강화 사업계획 및 추가 예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제2018년도 제13차 경영위원회 : 2018. 4. 16. 10:00

[안전 통지일 : 2018. 4. 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18년 SAA 및 ALM전략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하) 제2018년도 제14차 경영위원회 : 2018. 4. 30. 10:00

[안전 통지일 : 2018. 4. 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의결안건				
가. 2018년 5월 신규 상품	찬성	찬성	-	가결

(거) 제2018년도 제15차 경영위원회 : 2018. 5. 8. 10:00

[안건 통지일 : 2018. 5. 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의결안건				
가. 2018 ABL Summer Festival(Plan)	찬성	-	찬성	가결
나. PA채널 수수료 규정 개정	찬성	-	찬성	가결
다. 2018년 제2차 인사위원회 결과	찬성	-	찬성	가결

(너) 제2018년도 제16차 경영위원회 : 2018. 5. 14. 10:00

[안건 통지일 : 2018. 5. 1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업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더) 제2018년도 제17차 경영위원회 : 2018. 5. 21. 10:00

[안건 통지일 : 2018. 5. 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상무PA 지점 이전 설치(안) 및 추가예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러) 제2018년도 제18차 경영위원회 : 2018. 5. 29. 10:30

[안건 통지일 : 2018. 5. 2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Custodian Bank 업무위탁을 위한 사업승인 및 추가예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생명보험업권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플랫폼 구축사업 참여 및 추가 예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며) 제2018년도 제19차 경영위원회 : 2018. 6. 5. 10:00

[안건 통지일 : 2018. 6. 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의결 안건				
가. PA지점 폐쇄 및 사업본부 이전	찬성	-	찬성	가결

(버) 제2018년도 제20차 경영위원회 : 2018. 6. 19. 10:00

[안건 통지일 : 2018. 6. 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장기근속 지점장 보상제도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 7~12월 우수경력 신인FC 지원 시책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FC채널 수수료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고객센터 폐쇄 및 고객(화상)센터 이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험계약인수절차 및 기준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자동 보장분석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서) 제2018년도 제21차 경영위원회 : 2018. 6. 25. 10:00

[안건 통지일 : 2018. 6. 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로이구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3. 의결 안건				
가. FC채널 지점 폐쇄	찬성	찬성	-	가결
나. 2018. PA Channel Summer Campaign	찬성	찬성	-	가결
다. GA채널 2018년 7~8월 신계약 시책	찬성	찬성	-	가결
라. 영업채널 오버라이드 지급 규정 개정	찬성	찬성	-	가결
마. 해피콜ASP방식 도입	찬성	찬성	-	가결
바. 보유사옥 임대유치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신규, 원상복구 등) 사업 승인요청 및 추가예산	찬성	찬성	-	가결
사. 2018년 7월 신규상품	찬성	찬성	-	가결
아. 2018년 신 인센티브제도 변경 시행	찬성	찬성	-	가결

(어) 제2018년도 제22차 경영위원회 : 2018. 7. 2. 10:00

[안건 통지일 : 2018. 6. 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가결
3 의결 안건			
가. 2018년 7월 보너스주는 저축보험 DC 지급률 변경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저) 제2018년도 제23차 경영위원회 : 2018. 7. 16. 10:00

[안건 통지일 : 2018. 7. 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18년 9~10월 Recruiting Campaign	찬성	찬성	가결
나.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개정	찬성	찬성	가결

(처) 제2018년도 제24차 경영위원회 : 2018. 7. 30. 10:00

[안건 통지일 : 2018. 7. 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PA 채널 조직 안정화 지원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 8월 신규상품	찬성	찬성	가결

(키) 제2018년도 제25차 경영위원회 : 2018. 8. 6. 10:00

[안건 통지일 : 2018. 8. 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8년 상반기 사규(지침) 제·개정 현황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임원 승진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 제3차 인사위원회 결과	찬성	찬성	가결

(티) 제2018년도 제26차 경영위원회 : 2018. 8. 20. 10:00

[안건 통지일 : 2018. 8. 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18년 9~10월 환산월납 목표달성 시책	참석	찬성	가결
나. GA 채널 2018년 9~10월 신계약 시책	참석	찬성	가결
다. 2018년 9월 신규상품 및 변경상품	참석	찬성	가결
라. 2018년 제4차 인사위원회 결과	참석	찬성	가결

(피) 제2018년도 제27차 경영위원회 : 2018. 9. 3. 10:00

[안건 통지일 : 2018. 8. 3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18년 8월 명성PA지점 폐쇄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 PA채널 Recruiting Campaign변경	찬성	찬성	가결
다. ABL 5개사옥 노후시설 교체 및 추가예산	찬성	찬성	가결

(허) 제2018년도 제28차 경영위원회 : 2018. 9. 10. 10:00
 [안건 통지일 : 2018. 9. 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년 10~12월 위촉된 우수경력신인 FC의 제재금 총액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8. 4Q 광고캠페인 계획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 11~12월 Recruiting Campaign	찬성	찬성	가결

(고) 제2018년도 제29차 경영위원회 : 2018. 9. 17. 10:00
 [안건 통지일 : 2018. 9. 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년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8년 FC한마음 체육대회 시행계획	찬성	찬성	가결
나. 해피콜ASP 방식 도입관련 추가 예산	찬성	찬성	가결
다. 스캔/인식 소프트웨어 교체 및 기능 추가/개선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찬성	찬성	가결
라. 2018년 10월 변경상품	찬성	찬성	가결

마. 2018년 제4차 인사위원회 결과	찬성	찬성	가결
-----------------------	----	----	----

(노) 제2018년도 제30차 경영위원회 : 2018. 10. 8.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0. 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GA 채널 물품시책 및 판촉물 온라인 물 도입 사업	찬성	찬성	가결

(도) 제2018년도 제31차 경영위원회 : 2018. 10. 18.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0. 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신규 계리 모델링 시스템 설치를 위한 IT Infra 개선 사업	찬성	찬성	가결

(로) 제2018년도 제32차 경영위원회 : 2018. 10. 22.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0. 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FY2019~2021 외부감사 선임 사업	찬성	찬성	가결
나.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개정	찬성	찬성	가결
다. 비등기 임원 임기연장	찬성	찬성	가결
라. 2018년 제5차 인사위원회 결과	찬성	찬성	가결

(모) 제2018년도 제33차 경영위원회 : 2018. 10. 29.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0. 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18년 11~12월 환산월납 목표달성 시책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 11월 PA채널 생산성증대 지원(안) 시행 및 영업예산 추가	찬성	찬성	가결
다. GA 채널 2018년 11~12월 신계약 시책(안) 및 예산 전용·추가 예산 편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신규 재보험 특약 체결	찬성	찬성	가결
마. 2018년 11월 신규상품	찬성	찬성	가결

(보) 제2018년도 제34차 경영위원회 : 2018. 11. 5.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1. 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비등기 임원 보직 변경	찬성	찬성	가결
나.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개정	찬성	찬성	가결
다. 임원 승진	찬성	찬성	가결

(소) 제2018년도 제35차 경영위원회 : 2018. 11. 19.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1. 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찬성	찬성	가결

(오) 제2018년도 제36차 경영위원회 : 2018. 11. 26.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1. 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순레이	왕루이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8년 12월 신규 제도성특약 개발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9년 1~2월 Recruiting Campaign	찬성	찬성	가결
나.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개정	찬성	찬성	가결

(조) 제2018년도 제37차 경영위원회 : 2018. 12. 3.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1. 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순레이	왕루이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Flexible Work Place Pilot 구축 계획 및 추가예산 편성	찬성	찬성	가결

(초) 제2018년도 제38차 경영위원회 : 2018. 12. 10.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2. 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순레이	왕루이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제휴GA전산기기 렌탈서비스	찬성	찬성	가결
나. 2018년 ABL Award 선정 결과	찬성	찬성	가결
다. 2018년 제6차 인사위원회 결과	찬성	찬성	가결

(코) 제2018년도 제39차 경영위원회 : 2018. 12. 17. 09:30

[안건 통지일 : 2018. 12. 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생명보험업권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현황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나. 2019년 1월 변경 상품 및 신규 특약 개발 보고	특별한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GA 채널 2019년 1~3월 신계약 시책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 1~3월 우수경력 신인FC 지원 시책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 1~2월 환산월납 목표달성 시책	찬성	찬성	가결
라. 2019년 FC채널 영업 연도평가	찬성	찬성	가결
마. FC채널 점포 폐쇄	반대	반대	부결
바. 2018년 FC 채널 시책 경과규정	찬성	찬성	가결
사. PA사업본부(3개) / PA지점(16개) 폐쇄 및 2019년 예산	찬성	찬성	가결
아. 2018. PA채널 시책 경과규정	찬성	찬성	가결
자. GA자회사 이동대상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경과규정	찬성	찬성	가결
차. 2019년 1월 신규상품 DC지급률	찬성	찬성	가결
카. 공시이율규정 개정	찬성	찬성	가결
타. 재보험 협약 종결	찬성	찬성	가결
파. 임직원 건강검진서비스 계약연장	찬성	찬성	가결
하.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개정	찬성	찬성	가결
거. PA채널 사업종료에 따른 명예퇴직	찬성	찬성	가결
너. 2018년 제7차 인사위원회 결과	찬성	찬성	가결
더. SAP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연장	찬성	찬성	가결

(토) 제2018년도 제40차 경영위원회 : 2018. 12. 19. 10:00

[안건 통지일 : 2018. 12. 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FC채널 점포 폐쇄	찬성	찬성	가결

(포) 제2018년도 제41차 경영위원회 : 2018. 12. 21. 13:00

[안전 통지일 : 2018. 12. 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순레이	왕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FC실 사업가형지점장 제도 폐지 및 지점 폐쇄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경영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초 전년도 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경영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018년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행정지도 및 이와 관련한 에이비엘생명에 대한 권고 및 조치사항, 개선계획은 없습니다.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및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장 제6절을 근거로 하여 2009년 9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장 제3절에 의거 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2018년 말 기준으로 당사 보수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명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앙팅루 사외이사는 북경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만국립대학교에서 심리학과와 기업조직심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영분야의 전문가이고, 량페이 사외이사는 북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률사무소 근무와 다수의 글로벌 기업 근무 경력을 법률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또한, 당사는 보수체계 설계 시 위험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인 순레이 이사가 보수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18년 3월 30일 위원 선임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분야 종사경험 유무	약력
지앙팅루	위원장	사외이사	無	북경대학교 광화경영대학원 조교수
짜오홍	위원	비상임이사	有	안방자산관리
량페이	위원	사외이사	無	중국석화국제사

				업회사 법률 고문
--	--	--	--	--------------

- 2018년 3월 위원 선임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분야 종사경험 유무	약력
순레이	위원	사내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有	Allianz Korea CFO Allianz China CFO Allianz Taiwan Chief Actuary AZAP, Singapore -Regional Actuary Consultant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
지양팅루	위원장	사외이사	有	북경대학교 광화경영대학원 조교수
량페이	위원	사외이사	有	중국석화국제사업회사 법률 고문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순레이	상임	위원	2017.06.30	2020.06.29
지양팅루	사외	위원장	2018.03.30	2019.03.29
량페이	사외	위원	2018.03.30	2019.03.29

※ 2018.12월말 기준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당사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8년 4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집행임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보수한도에 대한 승인과 그 세부내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8년 10월 17일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원의 성과보너스 산정 제도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2019년 지급 예정인 2018년도 성과보너스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8년 10월 17일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원의 성과보너스 산정 제도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2019년 지급 예정인 2018년도 성과보너스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5)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8년 4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및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8년 4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금융회사 내 모든 사업부
- ② 해외: 해당 사항 없음

8)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경영진 및 특정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경영진의 범위는 당사 그룹보상정책 적용대상자인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으로, 특정 직원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18년 12월말 기준 경영진 등은 대표이사 사장 1명, 부사장 1명 등 총 2명이며, 특정 직원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2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없음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결의사항 중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8년 제1차 보수위원회 : 2018. 4. 5 (안건 통지일: 2018. 4. 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지양팅루	량페이	순레이	
1. 위원 성명	지양팅루	량페이	순레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18년도 보수위원회 의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7년도 성과평가 및 2018년도 성과목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7년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승인	찬성	찬성	기권	가결
라. 2018년도 집행임원 보수총액 승인	찬성	찬성	기권	가결
마. 임원 성과보너스 환수 규정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Retention bonus 지급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8년 제2차 보수위원회 : 2018. 5. 21 (안건 통지일: 2018. 5. 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지앙팅루	량페이	순레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CEO(순레이) 2017년도 성과보너스 지급 승인요청	찬성	찬성	-	가결

다) 제2018년 제3차 보수위원회 : 2018. 10. 17 (안건 통지일: 2018. 10. 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지앙팅루	량페이	순레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18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제도 변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CIO (Wang Rui) Special Bonus 지급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수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준,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수입보험료 증대, 당기순이익, 세전 기초이익, ANP 등), 건전성 지표(신계약보험료 가치 증대, Solvency 적정 비율 관리 등)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지표로는 고객만족지표(고객불만관리, 리스크 및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무지표(수입보험료 증대, 당기순이익, 세전 기초 이익, ANP 등)와 비재무적 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전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무지표(수입보험료 증대, 당기순이익, 세전 기초 이익, ANP 등)의 달성정도와 비재무적지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성과보상이 연동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60%는 보수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며 나머지 40% 상당액은 3개년 간(총 4개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시점에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고, 경영진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상여는 변동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으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2008년 1월부터 당사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하에서 Profit Sharing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와 연동된 변동급 지급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분기별 우수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2008년 1월부터 전직원에 대하여 호봉제에서 성과급제 임금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체계 변경이 아니라 장기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직무직급제도, 평가제도,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전반의 변경을 통한 ‘성과중심경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2018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경우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7. 9. 10.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회사의 임원 성과급의 이연지급을 결의하였고, 2018년 10. 17. 제 3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의 성과보너스 지급 재원 산정 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17년)	925	38.8	2,384%	941	0.98
당해년도 (2018년)	959	26.0	3,688%	907	1.06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 당해연도가 2016년인 경우 2015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	비등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전년도 (2017년)	보수총액	10.8	27.4	118.4	587.5	130	28.2	2.0
	성과보수액	3.2	5.0	5.5	26.1	5.7	2.5	0.08
당해연도 (2018년)	보수총액	10.8	22.5	120.7	527.3	80.0	8.5	8.2
	성과보수액	9.5	7.8	7.6	28.4	6.1	1.6	0.9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당해연도 (2017년)	임원	22	36.1	8.1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당해연도 (2018년)	임원	22	33.3	17.3	6.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 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16년)	임원	7.4	6.0	1.4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전년도 (2017년)	임원	8.1	8.1	0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당해연도 (2018년)	임원	17.3	17.3	0	0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주식: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 (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으로 기재

주3) 기타: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7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연도 (2018년)	임원	6.1	6.1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당해년도 (2017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18년)	임원	6.1	6.1	0	0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당해년도 (2017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18년)	임원	6.1	1.5	1.5	3.05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6년(t기) 발생분, 2015년(t-1기) 발생분, 2014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17년)	임원	해당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당해년도 (2018년)	임원	해당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7년)	임원	1	1.5	1.5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당해년도 (2018년)	임원	0	0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국문으로는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ABL Life Insurance Co., Ltd.(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한다. (2017년 7월 21일 본조 개정)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명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그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 자산 이용
 - 가. 국채, 지방채, 주식, 사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 나.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 다. 금융기관에의 예금 및 신탁, 대출 및 어음의 할인
 - 라.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자산이용 방법
3. 보험업법 및 관계금융법령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기타 상기 목적과 관련되거나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및 활동

제3조(소재지 및 점포 등의 설치) 회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역에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bllif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2013년 2월 15일 본조 개정), (2017년 7월 21일 본조 개정)

제5조(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2 장 주 식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 십만주권, 백만주권, 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신주발행) <1> 회사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그들 각자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3> 외국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경우 그 권리행사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얻는 데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명의개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권의 불소지) <1>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주가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질권의 등록) <1> 회사의 주식에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은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대표이사의 이서증빙) 제10조, 제1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가 증빙한 후 이를 청구자에게 환부한다.

제14조(주권의 발행) <1> 주권의 상실에 의하여 재발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제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권을 오손하거나 훼손한 때 또는 주권을 분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또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1> 회사는 매 결산기 말일의 익일부터 그 기의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특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의결권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전항 외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고한 후 임시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회사의 주주와 등록질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와 인감 또는 서명을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17년 2월 15일 본조 개정)

제 3 장 주주총회

제18조(소집의 결정)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9조(소집 및 통지) <1>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본사소재지 또는 인접지에 소집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 대표이사가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러한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의장직을 수행할 1인을 지명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2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에서 '서면'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012년 6월 13일 본조 신설)

제23조(의결권) 주주는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주주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회의의 3일전에 본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제2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의결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개회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보존·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및 이사회

제27조(이사의 인원수와 선임) <1> 회사는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두며,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2> 회사의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3>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

춘 자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4>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2>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일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개정), (2017년 7월 21일 본항 개정)

제30조(이사의 직무 및 책임)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3>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5>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이에 찬성한 이사와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전항의 책임이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6> 이사가 본 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책임을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2012년 6월 13일 제목 개정)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의 2일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써 통지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4> 제3항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제32조(이사회의 의장) <1>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2> 이사회 의장이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제33조(의결 및 의사록의 작성) <1>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012년 6월 13일 단서 신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개정)

<3>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2017년 2월 15일 본항 신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34조(위원회) <1>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등 제반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의한다.

제36조(고문 및 상담역)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37조(비등기임원) 회사는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비등기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임한다.(2012년 6월 13일 본조 개정)

(2012년 6월 13일 제목 개정)

제38조(충실의무) 이사 및 비등기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017년 7월 21일 본조 개정)

제 5 장 계 산

제3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2년 6월 13일 본조 개정)

[2014년 1월 1일 시행]

제40조(이익금의 계상) <1> 회사는 제수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에서 제지출금 및 차년도에 이월할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한다.

<2> 전 항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보험관계 법규에 의하여 이를 적립한다.

제41조(이익금의 처분) <1>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자본총액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
2. 주주배당금
3. 차년도이월금

<2> 전 항 이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주주배당금은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이사회에서 승인받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단서 신설), (2017년 7월 21일 본항 개정)

제42조(주주배당금)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017년 2월 15일 본조 개정)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회사의 대표이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 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3>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2012년 6월 13일 전문 개정)

제4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며, 그 사실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2017년 2월 15일 본조 개정)

제 6 장 보 칙

제45조(위임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기타 법령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서기 1954년 12월 2일 제정
2. 서기 1957년 5월 20일 개정
3. 서기 1958년 1월 7일 개정
4. 서기 1963년 9월 22일 개정
5. 서기 1965년 6월 18일 개정
6. 서기 1971년 5월 15일 개정
7. 서기 1971년 9월 13일 개정
8. 서기 1973년 9월 6일 개정
9. 서기 1973년 10월 6일 개정
10. 서기 1974년 4월 29일 개정
11. 서기 1974년 12월 21일 개정
12. 서기 1978년 4월 15일 개정
13. 서기 1980년 12월 3일 개정
14. 서기 1981년 4월 1일 개정
15. 서기 1982년 2월 15일 개정
16. 서기 1982년 6월 14일 개정
17. 서기 1983년 6월 8일 개정
18. 서기 1985년 6월 12일 개정
19. 서기 1991년 11월 28일 개정
20. 서기 1995년 6월 14일 개정(경과조치) 서기 1995년 6월 14일 개정내용중 본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21. 서기 1996년 6월 17일 개정
22. 서기 1996년 12월 4일 개정
23. 서기 1999년 7월 20일 개정
24. 서기 1999년 11월 23일 개정
25. 서기 2000년 1월 24일 개정
26. 서기 2000년 6월 28일 개정
27. 서기 2000년 7월 5일 개정
28. 서기 2002년 3월 2일 개정
29. 서기 2003년 9월 5일 개정
30. 서기 2004년 11월 11일 개정

31. 서기 2007년 1월 18일 개정
32. 서기 2010년 6월 25일 개정
33. 서기 2010년 11월 19일 개정
34. 서기 2012년 6월 13일 개정 및 발효. 단, 정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의 사업연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013년의 사업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5. 서기 2013년 2월 15일 개정
36. 서기 2017년 2월 15일 개정
37. 서기 2017년 7월 21일 개정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정책(규정, 지침)

정책(규정, 지침) 번호 Number		규정 제목 Name	지배구조내부규범
주관부서 Responsible Dept.	지배구조팀	적용범위 Apply To	회사전반
결재 그룹 Authorization Group	이사회	초안 시행일자 1st Version Date	2004.1.15.
개정판 승인일자 Approval Date	2017.9.21.	개정판 시행일자 Effective Date	2017.9.21.

버전 Version #	변경내용 Change Description	변경일자 Date	작성자 Author	검토자 Reviewer	승인자 Approver
V1	기관별 전결사항 마련	2005.06.14.	김대수	조우현	이사회
V2	투자위원회 폐지 및 문구 수정	2006.01.12.	김대수	조우현	이사회
V3	사규 명칭 변경	2006.05.11.	김대수	조우현	이명재
V4	별표 중 일부	2007.01.18.	이희옥	조우현	이사회
V5	별표 중 일부	2007.04.03.	이희옥	조우현	이사회
V6	감사위원회 및 별표 일부 개정	2009.05.06.	이희옥	조우현	이사회
V7	보수위원회 설치	2009.09.01.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8	생명보험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 기준 반영	2010.06.25.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9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권한 조정	2010.08.18.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10	경영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 회 권한 조정	2012.02.01.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11	개정상법 반영 및 별표 권한조정	2012.08.30.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12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 및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반영	2015.07.01.	이선명	양수지	이사회
V13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의 승인 권자를 이사회로 조정	2015.12.11.	이선명	양수지	이사회
V14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반영	2016.10.27.	이해원	양수지	이사회
V15	정기이사회의 개최 주기를 변경	2017.03.31.	이선명	양수지	이사회
V16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승인항목 추가 및 변경	2017.09.21	김화	양수지	이사회

목 적 (Purpose)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주주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

개요(Summary)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권한,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 각 기관별 전결사항을 정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이사회
 - 제 1 절 권한 및 구성
 - 제 2 절 이사
 - 제 3 절 회의
- 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
 - 제 1 절 통칙
 - 제 2 절 감사위원회
 - 제 3 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 4 절 경영위원회
 - 제 5 절 위험관리위원회
 - 제 6 절 보수위원회
- 제 4 장 임원
 -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 제 2 절 임원의 권한·책임
 - 제 3 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 제 6 절 보수위원회
-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 제 1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제 2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 제 3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 제 4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제 5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 제 6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 제 6 장 기 타
-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주주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2017. 9. 21. 본 조 개정, 2017. 9. 21. 시행]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2 장 이 사 회

제 1 절 권한 및 구성

제 3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승인하며, 그 주요한 승인 대상은 별첨 1 이사회의 승인대상과 같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및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 사항 및 그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4 조(구성 등) 이사회의 구성, 의장의 선임, 임기 등에 대하여 이 규범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5 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담당 임원 및 사외이사 지원부서 담당 임원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평가와 관련한 절차와 항목 등 기타 세부사항은 참여도, 기여도,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2017. 9. 21. 본 조 개정, 2017. 09. 21. 시행]

제 2 절 이사

제 6 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이사회가 이사로써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금융관련 분야에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7 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일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8 조 (이사 퇴임 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경우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9 조(역할 및 권한) ① 이사는 이사회 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②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제 10 조(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② 사외이사는 제 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 참여 등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시 활동에 대해 퇴직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계열회사 및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비영리법인등이 해당 회사로부터 기부금등을 받는 경우 이사회에 미리 보고할 것
3.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 등을 보고할 것

제 11 조(선임사외이사) ①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② 선임사외이사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제 12 조(사외이사 지원부서)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실 산하 부서를 사외이사 지원부서로 정한다.

②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침으로 정한다.

1.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3.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 2 항 제 2 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3 절 회 의

제 13 조(회의의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단, 상정안건이 없는 경우 혹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2017. 3. 31. 본 항 개정, 2017. 3. 31. 시행]

제 14 조(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대하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른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15 조(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록은 영구 보관한다.

② 의사록은 국문, 영문 또는 국문과 영문으로 병행 작성할 수 있으나, 국영문 병행 작성시 의사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③ 의사록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른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 1 절 통 칙

제 16 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경영위원회

② 회사는 제 1 항의 위원회 외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17 조(위원회 운영 및 권한의 위임) ①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규범에 의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② 이사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하며, 상법에 따라 권한의 위임이 제한되는 업무가 아닌 한 기타 업무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2015. 6. 24. 본 항 개정, 2015. 7. 1. 시행]

제 18 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최소 분기 1 회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의장은 이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위원회의 의장) 위원회의 의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20 조(위원회의 결의의 통지 및 재결의) 위원회의 결의 통지 및 재결의에 대하여는 상법에 따른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21 조(부의절차) ① 위원회(단, 감사위원회 제외)에 안건을 부의하는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은 승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사전통제를 거친 안건은 안건 부의 전 해당 위원회 위원(비등기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여자 포함)에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②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은 안건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간사가 지정한 날까지 직접 또는 전자문서로 부의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의 안건에 대한 결의 후 결의 여부를 해당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 전원과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범의 이사회 관련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23 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2 절 감사위원회

제 24 조(구성)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구성하며,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25 조(권한 및 역할) 감사위원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승인하고, 감사위원회의 그 밖의 권한 및 역할은 감사 정책 및 산하 규정에 따른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3 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 26 조(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27 조(권한 및 역할) ① 위원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승인한다. [2015. 6. 24. 본 항 개정, 2015. 7. 1. 시행]

② 위원회는 관련 법규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한 후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③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 ⑤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절 경영위원회

제 28 조(구성)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하여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29 조(권한 및 역할) 경영위원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승인한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5 절 위험관리위원회 (다른 정책 및 규정 등에서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정책”은 본 규범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기준”을 의미한다)

제 30 조(구성) 위험관리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31 조(권한 및 역할) 위험관리위원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승인하고, 위험관리위원회의 그 밖의 권한 및 역할은 리스크 정책 및 산하 규정에 따른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6 절 보수위원회

제 32 조(구성) 보수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하여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33 조(권한 및 역할) 보수위원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승인한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34 조(기본원칙) ① 이사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2015. 6. 24. 본 조 신설, 2015. 7. 1. 시행]

제 4 장 임원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35 조(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와 같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36 조(임원의 자격요건)

- 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다.
- ②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 6 조 제 1 항 및 제 3 항과 같다.
- ③ 이사가 아닌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2 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 37 조(이사인 임원의 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 ③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38 조(이사가 아닌 임원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가 아닌 임원은 회사 및 관계법령 등에서 부여된 직책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 ② 이사가 아닌 임원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3 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39 조(임원의 선임)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인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본 규범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다.
-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40 조(임원의 퇴임)

- ① 이사인 임원의 퇴임 기준 및 절차는 본 규범 제 8 조에 따른다.
- ② 이사가 아닌 임원의 퇴임 기준 및 절차는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임원의 유고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 41 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 및 연수제도를 운영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42 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회사는 사내의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외부 교육 및 연수제도를 운영한다.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 1 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 43 조(임원 성과평가)

①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44 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분류한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1 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제 45 조(경영승계계획의 수립)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46 조(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가 예정되거나 최고경영자가 임기 도중에 사의를 표명한 경우 또는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47 조(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2 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 48 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 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3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 49 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 ① 최고경영자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4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 50 조(최고경영자후보자 추천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5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후보자 추천절차

제 51 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 6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 52 조(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그 밖의 최고경영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53 조(최고경영자의 평가 및 퇴임)

- ① 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장한 바에 따른다.
 - ②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사임하는 경우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경우
 4.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6 장 기 타

제 54 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사회 등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5 조(간사) ① 이사회 등의 간사는 해당 이사회 등의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이사회 등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의 접수·정리, 의사록의 작성·보관, 결의사항의 위원 아닌 다른 각 이사에 대한 통지 및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 대한 통지 업무 등 이사회 등의 운영을 보좌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 56 조(정기공시) ① 회사는 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적기에 공시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②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 7-44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공시를 적기에 시행한다. [2015. 6. 24. 본 조 신설, 2015. 7. 1. 시행]

제 57 조(주요 공시) 회사는 전 조의 공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1.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사항(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공시)
2.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 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
3.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4.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변경 시 그 내용

- 5.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7.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제 58 조(기타 공시) 회사는 전 2 조에서 정하는 외에 보험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다(해당 규정이 정하는 날에 공시). [2015. 6. 24. 본 조 신설, 2015. 7. 1. 시행]

제 59 조(규정 변경)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한다. 단, 별첨 3 경영지원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사항의 개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60 조(업무기술서 및 흐름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첨 3 경영지원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별첨 3 경영지원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상위 법령, 규정 및 본 규정의 다른 조항에 상충되거나 반하는 경우, 상위 법령, 규정 및 본 규정의 다른 조항이 우선한다. [2015. 6. 24. 본 조 신설, 2015. 7. 1. 시행]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년 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년 6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영위원회운영규정과 감사규정, 투자규정, 리스크관리규정 중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은 폐지한다.

제 4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시행일) 이 RGP 는 2006 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시행일) 이 RGP 는 2007 년 1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시행일) 이 RGP 는 2007 년 4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시행일) 이 RGP 는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하고, 감사위원회 RGP 는 폐지한다.

제 9 조(시행일) 이 RGP 는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보수위원회의 설치).

제 10 조(시행일) 이 RGP 는 2010 년 6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제 11 조(시행일) 이 RGP 는 2010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 12 조(시행일) 이 RGP 는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13 조(시행일) 이 RGP 는 2012 년 8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 14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15 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16 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제 17 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이사회 의 승인 대상

구분	내용
경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사전 심의 ○ 위원회의 설치/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단, 감사위원 제외) [2016. 10. 27. 변경, 2016. 11. 1. 시행] ○ Strategic Dialogue(SD) ○ Planning Dialogue(PD) ○ 연도예산의 승인 ○ 30 억원 이상의 예산승인 [2017. 9. 21. 신설, 2017. 9. 21 시행] ○ 자회사의 취득/매각 ○ 내부통제 정책 및 윤리규범 방침 수립(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포함) [2015. 12. 11. 변경, 2015. 12. 11. 시행] ○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활동관련 내부통제정책 감독/평가/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승인 ○ 회사와 이사,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등을 이용하는 거래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사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개폐 [2017. 3. 31. 변경, 2017. 3. 31. 시행] ○ 정책의 제정 및 개폐 [2015. 6. 24. 변경, 2015. 7. 1. 시행] ○ 실의 상위 조직(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폐쇄/통합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 및 임원의 해임을 수반하는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폐쇄/통합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 정관의 변경 [2016. 10. 27. 신설, 2016. 11. 1. 시행]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폐 [2016. 10. 27. 신설, 2016. 11. 1. 시행] ○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정책 수립 [2016. 10. 27. 신설, 2016. 11. 1. 시행]
사업/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억원 이상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아웃소싱 포함) 승인/폐지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영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채널 신설/폐지
인사/ 복리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의 선·해임 ○ 준법감시인의 선·해임 ○ 선임계리사의 선·해임 ○ 비등기임원의 선·해임/징계에 대한 보고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장 및 선임(先任) 사외이사 선임 ○ 위험관리책임자의 선·해임 [2016. 10. 27. 신설, 2016. 11. 1. 시행]
자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의 취득/매각/업체선정(100 억 이상) ○ 기타자산의 취득/매각/업체선정(30 억 이상)
기 타	○ 법령 등에 의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

구분	이사회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경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의 운영 및 통제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 연간/중장기 내부감사계획 심의 및 의결 ○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활동평가 및 주요보고 수령 ○ 외부감사인 및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요청 ○ 회계기준 및 내부 통제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 ○ 내부감사 결과 [2015. 6. 24. 신설, 2015. 7. 1. 시행] ○ 준법감시인의 주요 활동 보고 수령[2015. 6. 24. 신설, 2015. 7. 1. 시행] ○ 감사정책 및 내부감사규정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예산(5,000 만원 이상)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 투자정책 수립 및 결정 ○ 투자정책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사항 [2015. 6. 24. 변경, 2015. 7. 1. 시행] ○ 계약자배당률 결정 및 산출 ○ 최선의 추정 가정 설정 ○ 재보험 계약의 체결/해지 ○ 소송물가액이 70 억원 이상인 소송의 응소 또는 제소 ○ 채널별, 상품별 DC 지급률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 전략 수립 [2016. 10. 27. 변경, 2016. 11. 1. 시행] ○ 위험관리 정책 및 규정에서 정한 기타 승인 사항 [2016. 10. 27. 변경, 2016. 11.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의 보수정책이 회사의 보수정책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서 정한 승인사항 [2015. 6. 24. 변경, 2015. 7. 1. 시행]				
사 규	○ 감사 정책 및 내부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2015. 6. 24. 변경, 2015. 7. 1. 시행]	○ 기타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정한 승인사항 [2015. 6. 24. 변경, 2015. 7. 1. 시행] ○ 임원의 해임을 수반하지 않는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폐쇄/통합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 실의 하위 조직(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폐쇄/통합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 조직(실/부서) 명칭 변경 ○ 부문간 업무분장 변경/조정	○ 위험관리 정책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016. 10. 27. 변경, 2016. 11. 1. 시행]		○ 보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의 제정 및 개정 ○ 임원 보수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업/ Project		○ 1.5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아웃소싱 포함) 승인/폐지. - 단, 다음 사항은 사장 전결로 한다. 1. 경영위원회의 최초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상업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사업의 중요한 내용(계약금액 또는 단가, 계약 상대방, 계약의 범위, 대상 서비스/재화의 범위 등)에 변경이 없을 것. 단, 이			

		<p>때 연장 또는 갱신하는 계약의 계약금액 또는 단가와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계약금액 또는 단가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 또는 단가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한다.</p> <p>(2) 최초 사업 승인 후 계약 개시일로부터 연장 또는 갱신하는 계약기간(계약기간과 용역제공기간이 상이한 경우, 용역제공기간. 단, 하자보수기간은 제외함) 종료일까지 3년 이내일 것.</p> <p>(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또는 갱신할 것. 단, 후속사업의 입찰절차를 위한 시간확보 필요, 동일한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제공 계약과의 통합 또는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 혹은 도급 업무의 완성이 최초 계약기간(용역제공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p> <p>(4) 계약 금액(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각 계약 금액을 합산한</p>		
--	--	--	--	--

		<p>금액으로 한다)을 연 환산하여 5 억원 미만일 것. 단, 후속사업의 입찰절차를 위한 시간확보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연장 또는 갱신하는 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사업은, 연장 또는 갱신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p>2. 기타 경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 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한 사업인 경우. 단, 경영위원회 승인 시 별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최초 사업 승인일로부터 연장 또는 갱신하는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3 년 이내여야 한다.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개발 / Repricing ○ 채널 Brand Name/CI 개발, 변경 			
<p>영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영업 전략 및 정책 수립/기준 변경 ○ 영업수당체계 변경 ○ Agent 를 위한 행사/선물/시책(1 억원 이상)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 영업직원 보상제도 등의 신설 및 주요 변경 			

		○ 영업채널의 연도평가 등 주요 행사			
인사/ 복리후생		○ 비등기임원의 승진/보직변경/ 연임/갱신/징계 ○ 직원의 정기 승진 및 임금인 상/표창 /징계 ○ 직원의 명예(특별)퇴직		○ 임원(사외이사, 대표이 사, 감사위원에 한정함) 후 보의 심의 및 추천	○ 비등기임원의 보수총액 ○ 임원의 계약/특별보수/특별 지원에 관한 검토/승인 ○ GEI 적용에 관한 사항 제안 ○ 임원의 성과보너스 지급을 위한 성과목표 및 결과 검토 및 보정 ○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 보 수전략에 관한 검토 및 승인
자 산		○ 부동산의 취득/매각/업체선정 (5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 ○ 기타자산의 취득/매각/업체선 정 (1.5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 행] ○ 100 억원 초과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등 거래			
기 타	○ 법령 또는 감독당국의 요구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승인 또는 보고가 필요한 사항 [2015. 6. 24. 신설, 2015. 7. 1. 시행]	○ 사회공헌(7,000 만원 초과) ○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경영위 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